

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11-0582338
신청일	2021-11-18 18:12:36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예

민원 내용

제목
내용

안전관리 계획서상 안전관리비 계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00소재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000000 입니다.

당사에서 0000시 로부터 발주된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되어 계약업무를 수행하려 하던중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 와는 상이한 내용의 점검회차를 안 내받아 문의 드립니다.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서상 타워크레인점검은 3회로 잡혀있어
타워크레인 (설치시,인상시,해체시)3회로 알고 입찰을 수행하여 낙찰되었지만 시공사에서 계약전
타워크레인이 7대 이며 인상은 각 2회 있다고 통보를하여 당사에
서는 그에따른 점검횟수증가 7기 X 4회(설치시,인상2회,해체시) 에
따른 점검비용을 계상해달라 요구를 하였지만
시공사에서는 낙찰된 금액 타워크레인(점검3회)의 비용만으로
7대 전부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
라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관리비는 타워크레인 대수에 관계없이 1
기기준의 공정기준으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것이 맞는것인가
요 ?
2. 위와 같은 경우 3회의 비용만으로 7기 X 4회(설치시,인상2회,해
체시) 총 28회의 점검을 수행하여야하는것인가요 ?

3. 위와같이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있지않은 점검회차를 요구 할경우 수행하지않는다면 그에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는 것인가요. 폐사에게 있는것인가요 ?

4. 3회의 비용만으로 당현장의 모든크레인의 점검 7기 X 4회(설치 시,인상2회,해제시) 총 28회의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낙찰을 포기하라는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하나요 ?

첨부 파일

.안전점검비용.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1-0627865
접수일	2021-11-19 17:12:42
담당자(연락처)	양경훈(044-201-3575)
처리에정일	2021-12-08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2021-12-08 14:57:1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워크레인의 정기안전점검 수행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건설현장의 여건이 다른 경우 안전점검 수행 기관의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모든 시설물, 모든 구조물, 모든 가설구조물, 모든 건설기계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타워크레인이 7대를 설치하는 경우 7대 모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이후에 입찰공고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는 타워크레인 인상시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상이 2번씩인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은 4회차씩 7대에 대하여 총 28회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 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의 횟수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제1항 제7호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제7의2호의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지정공고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달라 안전점검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타워크레인 7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횟수와 비용이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하며 발주청은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한 이후 승인된 내용(정기안전점검 횟수, 비용 등)을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양경훈 주무관(044-201-35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한마디 더	

인쇄